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6. 2. 9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- 나. 발 의 자: 차인영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2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차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 명: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지원사업 및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9조)
-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,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제정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검토 결과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실행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함.
-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, 포상,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.
-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(Digital Media Literacy)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판별하고 분석하여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,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위 정보, 가짜뉴스, 온라인 혐오 표현 등 디지털 환경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아동·청소년들은 정보의 진위 판단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고령층 또한 디지털 소외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.
- 이러한 배경 하에 2020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“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종합대책”을 수립하였고, 2024년에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추진할 “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”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서울시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3곳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마련하는 추세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구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보편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, 현행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침 하에 우리 구(區)에 맞는 실행 기반 및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짐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

교육 지원 조례안

(차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 의 자: 차인영·임현호·최인순
우경란·이성수·정선희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 명: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라. 지원사업 및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9조)
- 마.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, 제11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디지털 미디어”란 유선, 무선,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·수집·저장·가공·처리·송신·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,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.
2. “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(literacy)”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.
3. “디지털 시민성”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(이하 “교육”이라 한다)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
2.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
3. 교육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
4.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교육
5. 아동, 청소년,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
6.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
2.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
3.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
4. 연령별·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
5.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교육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소관 부서 과장 또는 팀장
2.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
3.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 등)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를

준용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 창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